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 마련 (안 별표3)

- 1)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그보다 앞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차수 적용기준이 없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됨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집행기준 명확화’ 권고(‘21.2.)
- 2) 과태료 가중처분 시의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 3) 가중처분 시의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대통령령 제 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을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33조 제1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호		500만원	
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법 제34조 제1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	법 제34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의2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3호	5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7446